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검 토 보 고 서

##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1년 10월 01일
- 회부일자: 2021년 10월 06일

## 3. 제안이유

- 폭력, 학대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피해장애인)을 임시보호하여 2차적 피해를 예방 하고 심리치료·사회복귀 지원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 「충청북도피해장애인쉼터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립하여 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4. 주요내용

- 위탁사무 : 충청북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 위 치 : 충북 도내(비공개 시설)
- 시설현황 : 건물(주택) 1층 97.05㎡, 2층 66.95㎡
- 위탁기간 : 2022. 1. 1. ~ 2026. 12. 31. (5년)
- 수탁기관 : 충청북도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법인
- 위탁방법 : 재위탁
- 예 산 액 : 336,656천원(국비 72,700, 도비 263,956)
- 위탁사무
  -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시 긴급 분리·보호
  - 피해장애인 숙식 및 일상생활훈련을 통한 사회적응력 향상
  - 피해장애인 상담 및 법률·권익옹호 지원

- 피해장애인 질병치료와 건강관리 지원 등
- 피해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직업재활 훈련, 자립지원 등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336,656천원(국비 72,700, 도비 263,956)

\* '21년 기준, 연도별 변동가능

인건비(248,284천원)	운영비(88,372천원)
· 센터장 : 53,354천원 x1명 = 53,354천원	· 업무추진비 = 1,020천원
· 생활재활교사 1 : 35,435천원 x1명 = 35,435천원	· 여비 = 1,000천원
· 생활재활교사 2 : 33,664천원 x1명 = 33,664천원	· 수용비및수수료 = 10,363천원
· 생활재활교사 3 : 32,834천원 x1명 = 32,834천원	· 공공요금 = 6,720천원
· 생활재활교사 4 : 31,050천원 x1명 = 31,050천원	· 제세공과금 = 1,250천원
· 조리원 : 21,870천원 x1명 = 21,870천원	· 차량비 = 8,787천원
· 퇴직적립금 = 17,181천원	· 시설비 = 21,778천원
·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 = 22,896천원	· 자산취득비 = 750천원
	· 생계비 = 23,100천원
	· 수용기관경비 = 1,200천원
	· 피복비 = 2,160천원
	· 의료비 = 1,400천원
	· 교육비 = 600천원
	· 사업비 = 8,244천원

## 5. 검토의견

### 가. 동의안 제출 개요

-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에 따라 설치되어 학대 피해 장애인의 긴급 분리·보호, 상담, 치료 및 건강관리, 일상생활 및 직업재활 훈련, 사회참여 활동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피해장애인쉼터 운영과 관련해,
  - 장애인 관련 전문성과 업무 노하우 경험을 활용하여 양질의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제출되었음.

## □ 충청피해장애인쉼터 운영현황

- 수탁기관 : (사단)장애인부모연대
- 위 치 : 충주소재(비공개 시설)
- 입소정원 : 8명(주 7일, 24시간 운영 / 입소기간 최대 3개월)
- 시설인력 : 6명(시설장 1, 생활지도원 4, 조리사 1)
- 시설규모 : 2층 주택(1층 97.05㎡, 2층 66.95㎡)
- 입·퇴소 절차
  - (입소) 도, 시·군 입소 필요성 및 적격여부 판단 후 쉼터에 의뢰
  - (퇴소) 입소기간 만료 및 입소자 퇴소 희망, 이송 등 사유 발생 시
- 사업내용
  - (임시보호)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시 긴급 분리·보호
  - (숙식제공) 피해장애인 숙식 및 상담 지원
  - (의료지원) 질병치료와 건강관리 지원 등
  - (사회복귀) 일상생활 훈련, 사회참여 활동, 직업재활 훈련

## 나. 검토 의견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충청북도지사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본 센터는 충청북도가 2019년 6월, 보건복지부 피해장애인쉼터 설치 공모사업에 참여해 충주 설치가 확정되었고, 같은 해 8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으로 (사)장애인부모연대를 선정하고, 10월 2일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음에도 아직까지 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지 않고 있었음.
- 피해장애인쉼터 설치하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시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한 바, 비록 민간 위탁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이지만, 조례에 따른 제도적 절차를 거치기 위해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

- 피해장애인쉼터의 민간위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른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고, 제4조의2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피해장애인쉼터 사무는 그 특성 상 제4조제3호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바,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서 적정하며,
  - 또한,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6쪽에 제시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의견을 확인한 결과,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방식의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8.>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되는 사무
4. 그 밖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18.]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

-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향후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위탁 사무들이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